

-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 보육위원회,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위원회, 고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함(안 부칙 제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난립 및 위원의 중복 위축 등으로 행·재정적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금번,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로 되어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전남 여수시에서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음.
- 위와같이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 볼때, 우리군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
- 조례 제명의 적정성, 조례안 제2조 사회복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기능의 이중성, 분과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조례안 제3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위원수의 적정성, 사회복지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시 분과위원장은 부군수는 당연직위원 또는 위촉직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적정성 등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깊이있고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정호용의원 외 6명 수정안 제출

6. 토 론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다른 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3항)

8. 심사결과

- 2004. 4.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